

법인설립 절차, 정관변경,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점검

회계법인 리파인드

정관변경·법인설립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설립 순서와 정관변경 결의 요건은 상법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토 결론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상법 §433①·§434).

정관과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기준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2호).

성립 조건 4개

1
결의 요건
특별결의 3분의 2와 3분의 1 충족

2
소집 절차
2주 전 통지, 의안 요령 기재

3
정관 근거
퇴직금 기준 조항 마련

4
등기
등기사항 변경 시 본점 2주 내 등기

이런 분께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며 정관을 처음 만드는 대표님
- 설립 때 만든 정관을 그대로 두고 운영 중인 대표님
- 임원 퇴직금·보수 규정이 없거나 오래된 법인의 대표님
- 현물출자로 설립하며 정관 기재사항을 확인할 대표님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현행 정관이나 설립 예정 법인의 정관 초안을 받아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퇴직금·보수·배당 조항의 유무를 점검합니다. 자본금 규모와 주주 구성도 확인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소집 절차 특례를 쓸 수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합니다.
2 쟁점 정리	바꿔야 할 조항을 가립니다. 등기사항이 바뀌는지,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법인 손금 한도와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각각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3 안 확정	개정 조항과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문안을 확정합니다. 소집통지서에 적을 의안 요령과 주주총회 의사록 문안도 함께 정리합니다.
4 실행·사후	주주총회 결의, 변경등기 대상 여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결의 뒤에는 만든 규정이 임원 전체에 계속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 읽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02

절차와 한도의 구조

설립 순서(발기설립 5단계)와 설립 뒤 정관변경 결의 요건을 상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상법 §289①). 설립 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433①). 세법도 정관을 근거로 삼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정관에 적힌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해 1. 발기설립 5단계와 근거 조문

정관 작성
발기인 기명날인 (§289①)

→

정관 효력
공증 인증, 10억 미만 발기설립은 서명(§292)

→

주식 납입
인수가액 전액 납입 (§295①)

→

임원 선임
이사 선임, 감사는 10억 미만 생략(§409④)

→

설립 등기
§299·§300 절차 종료 후 2주(§317①)

특별결의 =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상법 §433②). 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이 원칙이고(§363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363③). 이런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고, 서면결의는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입니다(§363④⑤). 다만 종류주식이 있고 개정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주면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합니다(§435①).

근거: 근거: 상법 §289①·§292·§295①·§296①·§299·§317①·§363·§409④·§433·§434·§435①

도해 2. 임원 퇴직금 한도, 법인 쪽과 개인 쪽

법인세법은 손금에,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각각 한도를 둡니다.

구분	기준	초과하면
법인 쪽: 정관에 정한 경우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거나 계산 기준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까지,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의 금액까지(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영 §44④)
법인 쪽: 정관에 없는 경우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영 §44④2호)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인 쪽: 2012.1.1~2019.12.31 근무분 계산액	2019.12.31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개월/12 × 3배, 2011.12.31 퇴직 가정액 제외(소득세법 §22③)	두 계산액의 합계를 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22③)
개인 쪽: 2020.1.1 이후 근무분 계산액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10 × 근무개월/12 × 2배(소득세법 §22③)	두 계산액의 합계를 넘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22③)

소득세법 §22③은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직무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42의2⑤). 근무기간은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세고(§22④1호), 법인 쪽 근속연수는 1개월 미만을 넣지 않습니다.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정관 조항마다 확인할 요건이 다릅니다. 6개를 먼저 봅니다

1 퇴직금 기준의 위치

정관과 위임 지급규정에 기준이 없으면 손금 한도는 퇴직 전 1년 총급여(비과세와 영 §43 불산입분 제외)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세고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22⑤). 직원이던 기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았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연 1억2천만원, 근속 6년이면 7,200만원입니다.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을 적거나 위임 지급규정을 두면 그 금액까지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시행규칙 §22⑤

2 지급규정의 일반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2018.5.18.)는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해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6구합72082(2017.5.18.)는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건 모두 1심 판결입니다.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으로 보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44⑤, 위 판결

3 개인 쪽 퇴직소득 한도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해도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퇴직소득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입니다. 2011.12.31 퇴직 가정액은 뺍니다. 한도는 두 계산액의 합계입니다. 2012~2019 근무분은 2019.12.31부터 소급한 3년, 2020 이후 근무분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과 해당 근무개월/12를 곱한 뒤 각각 3배, 2배를 합니다. 해당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환산합니다. 위 가정에서 2020년 이후 6년이면 1억4,400만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22③④, 시행령 §42의2⑤⑥

4 보수·상여 결의 기록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388). 임원 상여금이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②). 지배주주등(발행주식총수 1% 이상 보유주주 중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등 외 임원보다 많이 준 초과분도 같습니다(§43③⑦⑧).

근거: 상법 §388, 법인세법 시행령 §43②③⑦⑧

5 결의 요건과 퇴직금 규정

정관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고(상법 §434), 의안 요령은 소집통지서에 적습니다(§433②). 종류주식이 있으면 종류주주총회도 따로 봅니다(§435①).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정관변경과 같은 총회에서 결의해 두기를 권합니다. 정관 위임 요건(영 §44⑤)을 의사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433②·§434·§435①, 법인세법 시행령 §44⑤

6 설립 단계의 정관 기재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설립 후 양수할 재산,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는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290). 개인사업을 현물출자로 전환하면 현물출자자의 성명, 재산의 종류·수량·가격,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검사인은 §290 각 호의 사항과 현물출자 이행을 조사하고(§299①), 현물출자와 설립 후 양수 약정 재산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5분의 1과 5천만원을 모두 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299②1호, 상법 시행령 §7①).

근거: 상법 §290·§299, 상법 시행령 §7



04

판정 순서와 일정

결의 요건, 등기 기한, 퇴직금 한도 순으로 판정합니다

정관변경 일정

소집통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도 가능합니다(상법 §363①③).

주주총회
의안 요령을 통지서에 적고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꿉니다(§433·§434).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갈음합니다(§363④).

변경등기
등기사항이 바뀐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합니다(§317④·§183).

정관만 변경
임원 퇴직금 규정처럼 등기사항 목록(§317②)에 없는 조항은 결의만 하고 등기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 기한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299·§300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317①).

도해 3. 판정 순서

확인 질문	판정
정관변경 안건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충족합니다(상법 §434).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수입니다(§371①). 이에 못 미치면 정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류주식이 있는가	있으면 개정이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지 봅니다. 손해가 가면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435①).
바꾸는 조항이 등기사항인가	§317②의 등기사항은 1호(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2호 자본금의 액, 3호 발행주식 총수와 종류주식의 내용·수, 3의2~3의4호 양도 승인·주식매수선택권·지점, 4호 존립기간·해산사유, 6호 이익소각 규정 등입니다. 바뀌면 2주 내 변경등기를 합니다(§317④·§183).
임원 퇴직금이 현실적 퇴직에 따른 지급인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의 퇴직급여만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①). 임원 중간정산은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22③의 사유(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3개월 내 주택 취득, 임원·배우자·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재해)일 때 인정됩니다(영 §44②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간정산은 §44②3호가 따로 정합니다.
임원 퇴직금 기준이 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있는가	있으면 그 금액까지 손금입니다.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개인 쪽 한도를 넘지 않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22③의 한도(2012~2019 근무분 3배와 2020 이후 근무분 2배 계산액의 합계, 2011.12.31 퇴직 가정액 제외)를 넘으면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정관 검토 범위, 개정 조항 수, 임원 보수·퇴직금 지급규정 작성 여부에 따라 정하며, 견적서에 업무 범위를 적어 드립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정관변경은 어떤 결의로 하고 등기도 해야 할까요?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433①·§434).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넣지 않습니다(§371①).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적어야 합니다(§433②). 등기 여부는 바꾸는 조항이 §317②의 등기사항인지에 따릅니다.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1호), 자본금의 액(2호),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3호), 주식매수선택권·지점 소재지·이익소각 규정(3의3·3의4·6호) 등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317④·§183). 임원 퇴직금 규정은 등기사항 목록에 없어 정관만 바꿉니다.

상법 §183·§317·§371·§433·§434

Q2. 주주가 한두 명인 소규모 법인도 총회를 열어야 할까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결의 목적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입니다(상법 §363④⑤). 다만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2주 전(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 소집통지를 거칩니다(§363①③).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이 소집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63⑦). 결의했다는 서면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상법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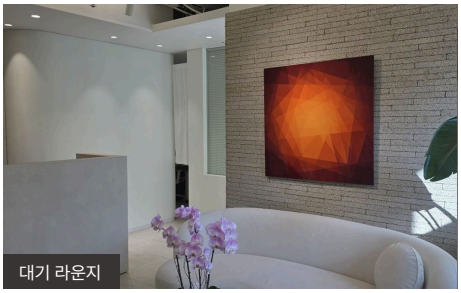
Q3. 임원 퇴직금은 몇 배까지 정할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에는 지급배수를 정한 조문이 없고, 금액이 법인 쪽과 개인 쪽에서 각각 제한됩니다. 법인 쪽은 정관에 정한 금액(계산 기준 포함) 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이고(법인세법 시행령 §44④1호·⑤), 정관에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44④2호). 개인 쪽은 소득세법 §22③이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2012.1.1~2019.12.31 근무분 3배, 2020.1.1 이후 근무분 2배로 정하고,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지급규정이 인정받지 못하면 정한 배수대로 손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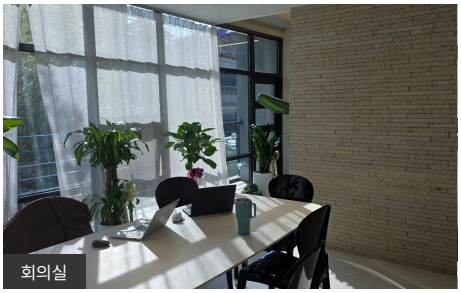
법인세법 시행령 §44, 소득세법 §22③,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34

담당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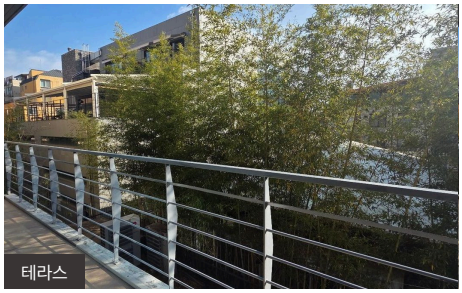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